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경만선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815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5일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제리, 문병훈, 노승재,
최영주, 김춘례, 김인호,
김호진, 김화숙, 오한아 의원
(9명)

1. 제안이유

- 한류의 확산을 비롯하여 국가 간의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 법적·제도적 지원은 미비함. 이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골자

- 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이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1호) 참조
-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또는 자치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조(포상)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법

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비용추계 전제

- 국제문화교류협의회는 20명(시의원 1명, 담당 공무원 1명,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
- 전문인력의 양성은 서울시 관광체육국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
- 물가상승률 미반영

3) 비용추계 산식

- 비용추계 합계액 ≡ 총 1,816,000천원 (연 평균 363,200천원)
 -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운영 : 총 66,000천원 (연간 13,2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18명 × 4회 = 10,800천원
 - 연간 업무추진경비 : 30천원 × 20명 × 4회 = 2,400천원
 - ※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을 제외한 13명, 업무추진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
 - ※ 회의참석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
 -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 1)(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따라 3만원 으로 가정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 총 1,750,000천원 (연간 350,000천원)
 - ※ 서울시 관광체육국 “2019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를 준용

나. 기술적 추계 곤란(제3조제1항제2호)

- 같은 조례안 제6조(사업) 제1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제2호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제4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